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3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52788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익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재림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이원준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가소262727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22.

판 결 선 고 2026. 6.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1,59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4. 11. 14.부터, 피고 C는 2025. 1. 17.부터 각 2026.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431,5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시각 효과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 플러그인의 개발회사로서, 호스트 네이티브 효과 도구에 의하여 유기 모양을 만들고 고급 시각 효과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영상 제작, 광고 및 홍보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3)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디자인 팀장이었으며 피고 회사에서 디자인 팀 총괄 업무 및 재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 피고 C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1) 피고 C는 2022. 8.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구비한 PC 8대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직원으로 하여금 무단복제 사실이 적발된 2023. 3.경까지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 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피고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24. 2.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약13347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24. 2.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약 13347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매 방식 및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 구매

1)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매 방식으로는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방식,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이용이 가능한 구독제 방식이 있으며, 각 구매 방식에서 Host를 기준으로 '① F ② G ③ H 버전'으로 나뉘어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원하는 버전 및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위와 같이 적발된 이후인 2023. 3. 13. 이 사건 프로그램의 G 버전을 월간 구독하기 시작하여 현재 까지도 유지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포함),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가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회사의 컴퓨터 8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저작권 침해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가 설치한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은 'F, 영구 사용 가능 라이선스'이다.



따라서 위 프로그램의 정품 가격은 미화 2,795달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액은 총 미화 22,360달러(=2,795달러 × 8개)이며, 2024. 11. 7.자 환율을 적용하면 31,113,94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8개의 정품 판매가격 상당액인 31,113,940원의 일부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인지하거나 감독할 여지가 없었으며,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 인지 이후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F, 영구 사용 가능 라이선스'가 아닌 'G 구독형 라이선스'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 C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 C가 아닌 피고 회사에게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F, 영구 사용 가능 라이선스'가 아닌 'G, 구독형 라이선스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에 대한 판단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



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나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영상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영상에 빛을 쏘아주는 것과 같은 시각 효과 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 피고 회사의 영상 제작 업무에 사용될 수 있는 점, ②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디자인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디자인팀 총괄 및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 직원의 이 사건 프로그램 불법 복제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그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불법행위 이후인 2023. 3. 13.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G 버전'을 월간 구독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유지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나 제4호증, 13호증,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소외 E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E은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고, 사용되고 있는지 몰랐으며, 구매 의사를 알 수 없었다."라고 답한 점, ② 경찰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본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E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특정하자면 그렇다."라고 답한 점, ③ 같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피고 C에게 피고 회사 내에서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회사 차원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한 사실이 없었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 C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한 점, ④ 피고 회사의 2023. 3. 13.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 구독과 관련하여 피고 C가 먼저 이를 제안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E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소외 I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 C가 주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피고 회사가 프로그램 불법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직원인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의 가부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시기인 2022. 8.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F' 버전을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의 정품 판매가격이 미화 2,795달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F' 버전을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한 라이선스의 정품 판매가격이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사용 방식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구독제 방식으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



은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Host를 기준으로 원하는 버전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② 원고가 책정한 프로그램 정품 이용료에는 정품 사용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의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J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2. 8.경 피고 C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G' 버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

④ 만일 피고 회사나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였다면 업무에 필요한 'G' 버전을 선택적으로 구매 혹은 구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프로그램의 'F' 버전이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가)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이 사건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 회사 및 피고 C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가 정한 '금전'이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외화로 표시된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거나 외화채권의 경우처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등 참조).

라)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10호증, 을나 제2호증의 3, 13호증,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12,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침해행위는 2022. 8.경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 컴퓨터 8대에 '복제'한 행위이다.

② 피고 C가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일단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나 사용기간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복제되어 있는 상태만으로도 피고 회사로서는 그 직원이 언제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 이용 가



능성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F' 버전이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2022. 8.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F' 버전 영구 이용 가능 라이선스 정품 8개의 판매가격은 미화 22,360달러(=2,795달러 × 8개)이며, 피고 C 및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G' 버전 영구 이용 가능 라이선스 정품 8개의 판매가격은 미화 13,560달러(=1,695달러 × 8개)이다.

⑤ 이 사건 프로그램의 'F' 버전 업그레이드 및 지원 라이선스 정품 8개의 판매가격은 미화 7,880달러(=985달러 × 8개)이며, 'G' 버전 업그레이드 및 지원 라이선스 정품 8개의 판매가격은 미화 4,360달러(=545달러 × 8개)이다.

⑥ 이 사건 프로그램의 'G' 버전 영구 이용 가능 라이선스 정품 8개의 판매가격에서 'G' 버전 업그레이드 및 지원 라이선스 정품 8개의 판매가격을 공제하면 미화 9,200달러(=13,560달러 - 4,360달러)이다.

⑦ 원고의 주장대로, 2022. 8.경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 컴퓨터 8대에 각 복제한 시점은 2022. 8. 17., 2022. 8. 22., 2022. 8. 23., 2022. 8. 25., 2022. 8. 29.경이며, 위 각 일자의 기준환율(최종 매매기준율)이 각 1,316.00원/1달러, 1,343.00원/1달러, 1,338.00원/1달러, 1,337.50원/1달러, 1,349.50원/1달러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

⑧ 위 각 일자의 기준환율로 미화 9,200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면 각 12,107,200원, 12,355,600원, 12,309,600원, 12,305,000원, 12,415,400원이다.

다. 소결론



피고 회사,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11,568,406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1. 14.부터, 피고 C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 1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5.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431,594원(=12,000,000원 - 11,568,406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2024. 11. 14.부터, 피고 C는 위 2025. 1. 1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6.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연대하여'는 '공동하여'의 오기임에 명백하여 이를 경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13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송승우

판사 손승온